

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

「농지법」 제31조의3(실태조사), 제54조(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)에 따른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(전수조사)의 추진을 위하여 관내 농지의 이해관계인에게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하나,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0일

노 원 구 청



현장출입조사서

노원구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(농지소유자 포함) 귀하

조사목적	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			
조사기간	2026. 10. 20. ~ 2026. 12. 31.		조사장소	노원구 일원
조사원	소속	노원구	직급 또는 직위	노원구 소속 담당공무원 및 농지조사원
조사의 범위와 내용	노원구 관내 농지 소유자, 실경작자,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			
제출자료	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(소명 요구 시)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			
법적 근거	「농지법」 제31조의3, 제49조제3항, 제54조제1항, 제54조의4			
거부시 제재사항 (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)	「농지법」 제54조의4(토지등에의 출입) 제4항			
그 밖의 안내사항				

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담당자: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 (☎02-2116-3177)

2026년 10월 20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